

4.2.6 시간강사임용규정

제정 1999. 11. 01.

개정 2002. 01. 23.

개정 2015. 07. 3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① 강사의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분야의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 본교 직원 가운데 전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15.07.31>

제3조 (위촉시기 및 기간) 강사는 총장이 매 학기 초(3월 1일, 9월 1일자)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.

제4조 (위촉절차) ① 각 학부(학과)장은 다음 학기 개강 2개월 전에 학부(학과) 교수회의를 거쳐 강사를 추천하고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1. 이력서 1부
2.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3. 재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4.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5.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 부
6. 주민등록등본 1부

② 본교 직원 및 최근 2년 이내 시간강사 위촉자는 전항 제2호의 추천서만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<신설 2015.07.31>

③ 강사의 위촉은 교무처장에게 제출된 서류를 시간강사위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 <개정 2015.07.31, 항 이동>

④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5.07.31>

1. 본교 강의평가 점수가 3.5 이하인 과목이 있는 경우
2. 무단결강 3회 이상(학기 당)
3. 강의평가 결과 중 결강 및 휴·보강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3.5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
4. 대학정책 위배 3회 이상(누적)

제5조 (강사료) ① 강사료의 책정 지급 책임시간 담당시간 제한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강의학점 및 강의비 지급규정에 준한다.<개정 2015.07.31>

② 비행교육원 소속 직원은 비행교육원 내규에 따른다.<신설 2015.07.31>

③ 비행교육원 소속 직원을 제외한 본교 직원이 주간 오프라인 강의(블렌디드러닝의 오프라인 부분 포

함)를 하는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주말, 야간, 온라인 강의(블렌디드러닝의 온라인 부분 포함)는 본교 교원의 초과강의비로 적용한다.<신설 2015.07.31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 <삭제 2015.07.31.>